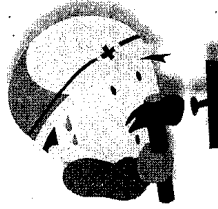


## 20대 청년 알바생 건설현장 출근 늘어



취직 53% 급증 6만9,000여명  
전체근로자 중 52% '50대 이상'  
외국인 늘었지만 고령화 심화

20대 건설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5 퇴직공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건설근로자는 6만9,567명으로 2011년 대비 5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60%는 기능이 필요 없는 보통인부로 일시적 취업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았다.

젊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중 30대 이하는 2013년 32.0%에서 2014년 33.9%, 2015년 37.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건설현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3년 6.7%, 2015년 8.0%로 매년 늘고 있다. 직종별로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는 '보통인부'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틀목공(8.1%) △철근공(5.7%) △배관공(5.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50대 이상 건설근로자가 절반이 넘는 52.2%로 건설인력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퇴직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장 수는 2만2,053개소로 전년도 1만9,539개소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시공물량이 늘어나면서 시공금액도 2014년보다 2.3% (89조원→91조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건설기업공사가 2014년(703건) 대비 25.7% 증가(884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公共공사비 산출 '잠정금액' 확 줄어든다

조달청, 기술사용료 등 23개 항목  
확정금액으로 전환 예정가격 반영

앞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 중 잠정금액(PS)을 적용하는 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발주자의 무분별한 잠정금액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사비(예정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7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그간 예가 산정 시 잠정금액을 반영했던 23개 PS항목(설계미확정공종)을 확정금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PS항목 적용기준'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사용료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금액(PS·Provisional Sum)이 아닌 확정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항목별 확정금액을 책정, 예정가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또 원활한 입찰업무 수행을 위해 PS항목의 산출내역 작성방법 및 정산기준 열람방법 등을 입찰공모서에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주자의 무분별한 PS 적용이 차단되고 무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 종료시점의 원가검토 등 사후 정산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사비 갈등이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권기자 skbong@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 발주자 공사비 삭감 관행 '제동' 수익성 예측 정확도 높아질 듯

## 뉴스 돋보기

### 公共공사 PS 항목 축소 영향

업계는 잠정금액 적용 항목이 줄어들면 PS를 이용한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잠정금액을 설정하거나, 사후정산 시 공사비를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정부 발주 공사비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종의 경우, 설계 미확정 등으로 인해 발주에 앞서 확정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설계미확정공종(PS) 내지 PS항목이라 한다.

발주자(수요기관)는 이 경우에 한해 잠정금액(PS·Provisional Sum)을 설정,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이나 공사 종료 시점에 원가검토 등 사후 정산 방식으로 항목별 공사비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발주자마다 PS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나 잠정금액 산출 방법이 제각각이란 데 있다. 비슷한 PS항목이라도 수요기관에 따라 예가에 반영하는 잠정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부 발주자의 경우에는 무

분별하게 PS를 적용하고, 잠정공사비를 무리하게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업계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위적인 원가검토나 발주자의 '입김'에 따라 PS 공사비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PS항목에 대한 실투입비조차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 공사비 책정·사후정산 투명성 제고 시공 중 설계변경 등 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조달청은 PS 적용기준을 마련, 23개 PS항목을 확정금액으로 전환시켜 공사비 산출 및 정산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상 항목은 기술 사용료와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를 비롯, △기존도로 포장 △도로대장 작성비(전산화)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비 △비탈면 안정성 검토비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시공측량비 △시험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비) △안전시설비 △안전점검비 △연구개발비 △연안환경복원 모니터링비 △정기안전점검비 △준공도서 작성비 △지질조사비 △추가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해양환경영향조사

△흙막기비탈면 현황도 작성비 등이다.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집행한 건축, 토목공사를 보면, PS 적용항목은 최대 50건에 이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대상이 40% 이상 축소된다.

조달청은 이들 항목에 대한 PS적용이 제한되면, 50억~100억원 미만 토목공사에서 PS비중은 평균 1.92%에서 1.38%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비 책정과정과 더불어 사후 정산 관련해서도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공중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등 행정업무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중 잠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전체 공사비 대비 2~3% 남짓이지만, 적정 실행 확보도 쉽지 않은 요즘 공사에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공사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PS 적용대상이 확정금액으로 전환되면, 입찰참가자의 수익성 분석 및 예측은 보다 정확해진다"면서 "더불어 발주자가 예산을 핑계로 잠정금액이나 사후정산 PS공사비를 삭감하는 행태도 줄어들게 돼 시공사가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권기자 skbong@

## 조달청, 다음주 총 1146억 신기술·서비스 입찰 집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다음주(11.21~25)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사업 등 모두 225건, 1146억원 규모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주 대비 입찰물량은 22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대형사업이 줄어들면서 추

정가격 기준 전체 집행규모도 3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주 집행예정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사업이 총 125건, 581억원 규모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용역이 93건, 469억원 규모로 뒤를 잇는다.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가칭)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모두 7건, 96억원 규모의 입찰이 예정돼 있다. 계약방법별로는 사전심사(PQ)방식이 4건, 설계공모 대상이 3건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지방청(612억원)과 대전 소재 본청(348억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83.7%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이 186억원 규모의 입찰을 소화할 예정이다. 방송권기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다(민법 제664조 참조). 수급  
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제3자에게 일의  
전부나 일부를 맡길 수 있음이 원칙이나,  
수급인이 수수료 형식의 이득만을 취하  
고 타인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건  
설산업기본법 등이 하도급에 대한 제한  
과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괄 하도급 금지에  
관해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나와 화제다.

A사의 대표이사인 B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항구정비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건설업 면허가 없  
는 무등록업체 C에 일괄 하도급했다. A  
사와 대표이사 B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2개 부  
분이었는데, 1, 2심은 무등록업체에 대  
한 하도급인 점, 일괄 하도급인 점 모두  
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보았다. 그  
러나 대법원은 일괄 하도급 부분은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5도11634

판결 참조).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  
일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  
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  
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  
다고 일괄 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건설업자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  
는바, 무등록업체는 위 법상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에는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등록업체도 등록 건설업자와 동일하  
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2011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2년 5월부터는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  
도급을 하는 경우도, 등록업자에 대한 일  
괄 하도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동법 제95조 제4호 참조),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 역시 일괄하도급과 동일하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의 원칙  
과 예외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로콜 변호사